##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1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임오경

윤준병 • 이훈기 • 정진욱

신정훈 • 윤건영 • 임호선

정동영·장철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 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지난 3월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만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

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및 제29조의7).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 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 -----2027년-----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 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 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중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② ~ ⑧ (생 략)

•
4 0 (=1 =1 =1 0 )
1 • 9 (혀해라 간으)

- 1.•2. (현행과 샅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